

# 202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4.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4. 18.(월)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1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정남철 위원, 노승용 위원, 전다운 위원, 지준연 위원</li> <li>○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li> </ul>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19 : 행정안전부 정책과 의견과 변호사 법률자문</li> <li>○ 2024-20 : 손해사정업무를 위한 화재감식 보고서</li> <li>○ 2024-21 : 119 구조기록</li> <li>○ 2024-22 : 2024년 제2차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결과</li> </ul>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19 : 기각</li> <li>○ 2024-20 : 기각</li> <li>○ 2024-21 : 기각</li> <li>○ 2024-22 : 기각</li> </ul>

# 1. [의안번호 2024-19] : 행정안전부 정책과 의견과 변호사 법률자문

## ○ 000 위원

의안번호 제2024-19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했던 사항은 행안부에 보낸 운영을 종료한 에스컬레이터 계단 사용과 관련된 공문으로 된 질문과 답변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자문 답변 내용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는 부분공개 결정을 해서 첫 번째 공문과 관련된 내용과 질의 회신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자문의견서입니다. 맞습니까?

## ○ 000 조사관

맞습니다.

## ○ 000 위원장

이 변호사 자문의견서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공개하라고 이의신청을 해 주셨고, 또 이것은 결정이 끝나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논거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여기 제시해 주신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가 좀 잘못됐는데 선고2002두12946 재판입니다.

비공개에 관련된 근거자료이고, 이와 같은 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고요. 이 사건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사안과 관련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 000 조사관

위원장님, 지금 이분 청구인은 좀 오인을 하고 있는 게 5호가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이 끝났으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근거를 든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등 열거한 내용 그 이후에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분이 주장한 부분은 좀 오인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안은 간단합니다. 이 지금 회의록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도 비공개로 했던 사항도 있는데요. 이 근거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 앞에 제시된 사항들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관련된 건 예시적인 것이고, 이 회의록은 의사결정 과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요.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비공개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판례가 좀 명확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공문과 관련된 사항은 다 공개를 했고요, 제 의견은 여기 판례가 명시적이고, 종전에도 지금 이 자문과 관련된 사항들은 추후 업무 수행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공개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판례에서도 아마 기초자료나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보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독일 정보공개법에 관한 논문을 썼을 때도 이런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기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000 위원

주심위님이 판례가 명백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 회의록 관련 판례를 말씀하신 건가요?

○ 000 위원장

그렇습니다.

○ 000 위원

혹시 이런 법률자문의견서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000 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도 이걸 비공개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명시적인 판례는 지금 이게 아마 제일 유사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일단 이게 그냥 질의 답변인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회의록에 대한 것이어서 이런 법률 그냥 개별 건에 대한 자문의견을 받은 것이 이 5호가 딱 적용될 만한 사항인지가 제가 좀 확신이 안 서서요. 혹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답변이 다 완료된 사안인데도요.

○ 000 위원장

지금 여기 판례 내용이나 취지를 보면 지금 회의 관련된 자료나 회의록 등이 이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 여기에 바로 적용이 된다고보다는 여기 앞에 내용에 열거돼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 사안도 그에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것을 살펴볼 때는 결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주는지가 쟁

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록 회의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자문의견이나 또 의사들의 자문내용이 이게 공개가 되면 향후 이분들이 자문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업무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준다는 것들이 우리가 그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을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 000 위원

저는 이 판례가 이런 회의록이나 직접적인 의사결정 근거자료 뭐 이런 회의록이 바로 이 법률자문의견서에도 적용될지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다른 위원분들께서 다 같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기각 의견 주셨고요. 일단 기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2024-19호는 “기각”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 2. 의안번호 2024-20 : 손해사정업무를 위한 화재감식 보고서

###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20호 중량소방서 현장대응단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 000 위원

일단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정보공개청구서상의 문건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현장출동(감식)보고서, 관련사진(컬러) 이렇게 최초 청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공하신 이 청구내용에 따라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는 자료는 모두 공개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 부분 빼고요.

### ○ 000 소방위

맞습니다.

### ○ 000 위원

이게 문건명이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감식보고서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 ○ 000 소방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단어 선택이 사람 다르기는 한데요. 정확한 명칭은 화재현장조사서이고요. 이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 ○ 000 위원

그리고 같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의제기신청서, 소견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화재현장조사서 작성할 때 참고하신 자료들인가요? 조사지 작성 전에 받은 자료인가요?

### ○ 000 소방위

아닙니다. 저희가 작성한 거는 화재현장조사서이고 이것을 받아본 민원인 입장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게 이 이의신청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 ○ 000 위원

저도 요지는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6번 폴더 안에 있는 이의제기신청서, 제조업체소견서, 제품사용설명서 이거는 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받으신 거예요?

○ 000 소방위

그렇습니다. 제조사에서 본인들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제출한 본인들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당시에 촬영하신 사진은 모두 제공하신 거지요? 컬러사진도요.

○ 000 소방위

맞습니다. 그 화재현장조사서에 저희가 조사할 때 촬영하고 작성한 사진들이 다 그 안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의신청한 요지는 그 화재원인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거라고 저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혹시 뭔가 미제출된 자료, 미공개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를 요구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 해서 여쭙본 건데요.

그러니까 덮개 존재 여부 이런 걸 확인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공개해 달라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할 것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 000 소방위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 화재현장을 보고 판단했던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어떤 의견을 구하는 거지 따로 정보가 있는 건 없습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소방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회신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어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안은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이거는 조사관계서 작성하신 화재현장조사서를 최초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정보만 빼고 공개를 하셨는데요. 화재발생 원인에 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도 적절한 이의사유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서도 이거는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지 비공개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것 같더라고 하셨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추가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에서 각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거 지금 자료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를 각하로 할지 기각으로 할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아마 애초에 아예 없는 자료보다는 지금 청구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금 생각되어서요. 이유가 없는 주장으로 봐서 기각으로 의견을 좀 조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 의견을 한번 여쭙고요.

○ 000 위원

저도 없는 자료를 지금 청구하고, 부존재 사유를 이유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기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000 위원

저도 기각에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도 기각 의견을 드리겠고요. 모두 기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결정입니다.

### 3. 의안번호 2024-21 : 119 구조기록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21호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및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이 사안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여쭙볼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고가 두 번 돼 있잖아요. 1차 신고하신 분하고 2차 신고하신 분하고 다르  
잖아요. 1차 신고할 때 지하 2층으로 오라고까지 얘기가 다 돼요.

○ 000 소방장

네.

○ 000 위원

그리고 2차 신고하신 분이 직접 현장출동하는 대원님하고 통화를 요청을 하는데 그건  
쉽지 않다 이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쭙볼 거는 여기 구급활동일지에 보면 환자 발생위치가 804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착한 장소가 지하 2층은 맞습니까?

○ 000 소방교

이 환자 구급활동일지 내의 환자 발생위치가 804동까지 작성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신  
고가 들어오면 이 발생위치는 자동으로 일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1차  
신고에 맞춰서 804동까지 기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직원으로 파악한 바 저희 직원들은 1층으로 차량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집  
촉하러 내려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앰블런스 자체가 지하 2층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였나요?

○ 000 소방교

저희가 웬만하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위에 구조물이 높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아주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지하 진입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비록 딱 들어가는 높이가 맞아 보이더라도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 위에 있는 구조물에 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서 상황 판단을 해서 구급차가 들어가기에 조금 어렵다, 뭔가 파손의 위험이 있다 하면 지하 1층에 부서(차량배치)를 하게 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이의신청인은 최초 신고 이후에 추가전화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랬는데 그건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으로 같음하면 되는 것 같고요.

○ 000 소방교

네.

○ 000 위원

그리고 구급활동일지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는데 그 번호가 지워져 있고, 환자 인수자 이름이나 이런 게 다 지워져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결정 내용에서 주장하신 제3자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이?

○ 000 소방교

맞습니다.

○ 000 위원

아까 2차 전화 신고하신 분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분하고 그 당시에는 통화를 되게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출동하는 과정에 처음 신고하고 다른 내용을 제3자나 아니면 다른 분이 또 직접 현장 출동하는 대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 경우가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 000 소방장

신고 당시 때 통화를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취록 들었을 때 통화를 하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달라거나 그런 말이 없거든요.

보통 출동 나가는 대원이 전화를 나가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의 상황이 신고

당시 때랑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전화를 하든 안 하든 합니다.

○ 000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구급대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 000 소방장

출동 나갈 때 다 전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 지령 내용이 신고 당시 때 신고자가 위치와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굳이 출동하면서 구급대원이 다시 추가적으로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심정지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신고자와 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화 중일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지령 내용이 정확하고 확실할 것 같으면 굳이 전화하면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급대가 판단하에 전화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받을 접수요원이 전화를 하라고 따로 이렇게 지령서에 작성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문이 있습니까? 추가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주심위원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구급활동일지에 신고자나 환자인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정보원은 당연히 개인 정보보호법하고 기타 저희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서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중간에 출동 프로세스나 이런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매뉴얼도 갖춰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이 기각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이게 이의신청한 취지가 녹취파일을 공개해 달라는 거잖아요. 주심위원님, 혹시 이거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000 위원

맞습니다.

녹취파일도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일지에 지금 비공개된 걸 추가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민원 상담 같은 거 할 때 업무상 하는 통화 내용은 공개 대상이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히 민감한 그런 비업무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목소리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다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거 혹시 다르게 봐야 할 여지가 있을지가 저도 약간 판단이 안 되는데요. 혹시 위원장님도 의견 주시면 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녹취파일도 개인정보로 기각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도 119 관련된 비디오 화면도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어렵고 너무 분량이 많아서 비공개로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건도 아마 녹취내용에 따라서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주체 동의까지는 조금 다 살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녹취 내용 전체를 어떤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각으로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판단할 경우에 119 신고 녹취파일 일반적으로 뭔가 저희가 적용

되는 판단 기준이 될까 싶어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기각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은 기각 의견으로 모여졌고요.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의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21호는 “기각”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결정입니다.

#### 4. 의안번호 2024-22 : 2024년 제2차 서울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처분결과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22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내용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000 주무관

저희가 매달 인허가권자가 저희한테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이번 민원은 이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그 처분결과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건축사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 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 000 위원

청구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청구를 한 건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첫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했고, 그때 비공개로 하셨고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었나요?

○ 000 주무관

이의신청은 없었고, 바로 2차 다시 요청을 해서 이번에도 비공개를 하면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 000 위원

이번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 2023년 7차 징계위원회 내용은 공개를 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항인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적은 없고, 저희는 결과를 인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하는데요. 그 인허가권자가 저희 공문을 민원인한테 공개를 했는데 그분은 저희가 공개했다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 상황인 건가요?

○ 000 주무관

네. 저희는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 000 위원

거기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로 붙어 있는 내용들은 거기 사진들하고 같이 해서 이미 공개를 그때는 했었는데 왜 이제는 안 하느냐라는 그게 청구인이 이야기하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동일인인 것 같던데 맞나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대상이 되는 건축사분이 똑같은 분인가요?

○ 000 주무관

건축사도 동일인입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분결과 자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시가 안 됩니까?

○ 000 주무관

저희는 전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사 개인에 대한,

○ 000 위원장

이름을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해서라도 징계처분 내용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 000 주무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징계내용이나 심의 확정일 이런 걸로 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저희는 전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요. 이 사안에서 인허가권자라고 말씀하신 게 어디인가요?

○ 000 주무관

이 사안이요?

○ 000 위원

네. 여기서 인허가권자, 건축과.

○ 000 주무관

00000 건축과요.

○ 000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아니라,

○ 000 주무관

건축과에서 보통 인허가를 하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하고, 그 인허가권자가

이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한테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인허가권자라는 게 서울시 건축과인 게 아닌가요?

○ 000 주무관

이게 건축사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한 게 서울시 건축과에 연락해 보시라 이런 의미로 쓰신 건가요?

○ 000 주무관

아니요. 저희한테 의뢰한 00000 건축과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아마 거기도 이걸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 000 주무관

이게 저희가 00000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전 담당자는 저희 공문까지 전부 공개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민원담당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또 비공개를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러면 공개를 했던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 000 주무관

네, 전임자는 공개를 해서요.

○ 000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계사항이 공개되는 건 아니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아시다시피 원래 국토부에 징계권이 있는데 이걸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여기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고, 징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데요. 비공개 사유 5호, 6호에 다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이전에 공개를 했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00000의 전임자의 어떤 행태인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 22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기각했던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항들을 봤고요. 지난번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6호, 7호로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하고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과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기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2024-2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결정입니다.